

온천연구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 및 목적) 이 규정은 온천분야의 기술 및 실용 등 전범위 연구를 통하여 해당 분야의 국내외 최고 연구소로 발전하기 위한 호서대학교 온천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내에 둔다.

제3조(사업내용)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온천분야의 연구개발(연구용역, 제품개발, 실용화)
2. 온천분야의 국내·외 기관과의 공동 학술활동
3. 온천수 품질기준 정립과 체계화
4. 온천관련 각종 문화기획 및 페스티벌 운영
5. 온천유관분야 교육훈련
6.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 2 장 조직 및 구성

제4조(조직) 연구소는 국내 최우수준의 온천분야 전문연구 및 정부, 지자체의 대규모 온천관련 사업의 유치실현을 위한 조직으로 다음 각 조직을 둔다.

- ① 온천정책연구팀 : 온천관광 행정, 지역개발, 제품마케팅 등 연구용역을 수행
- ② 온천바이오연구팀 : 온천수의 기능과 효과분석, 관련 제품 개발 등
- ③ 온천문화기획팀 : 온천관련 관광상품 개발, 온천관련 문화 페스티벌 기획
- ④ 대외협력팀 : 교내외 관련 연구소와 협력 방안 연구, 국내 저명 교수 및 연구자와의 협력연구 추진, 관련 기업 및 정부기관과의 산학관협력 추진,

제5조(구성) 연구소 임원구성은 소장 및 각 팀에 팀장 1인을 둘 수 있다.

- ① 소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업무를 총괄 한다.
- ② 팀장은 소장이 임명하며, 팀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.
-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, 비상임연구원, 객원연구원, 연구원, 박사후연구원(Post-Doc), 전문위원, 연구보조원, 기술원 및 사무원 등을 둘 수 있다.
- ⑤ 연구소내의 연구원 임용은 대학의 ‘연구원 임용규정’에 준용한다. 단, 연구보조원은 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6조(구성 및 회의)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

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-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,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- 1. 주요 사업계획 및 운영방법
- 2. 예산 및 결산
- 3. 규정개정 발의
- 4.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 4 장 재 정

제 8조 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당한다.

- 1. 교외수탁연구비 및 수탁연구비의 간접경비
- 2. 산업체의 연구개발 출연금
- 3. 각종 연구비와 기타 수입누적금
- 4.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

제 9조 (회계연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대학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 5 장 폐 소

제10조 (폐소) 본 연구소가 폐소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.

제 6 장 보 고

제11조 (보고)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때 보고는 연구소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- 1.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(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)
- 2. 매 회계연도 결산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- 3.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-1월말까지
- 4.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

제 7 장 보 칙

제12조 (준용)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3조 (운영세칙)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(경과조치) ① 이 규정 공포와 동시에 종전의 규정은 폐지한다.